

대전지방법원 2019. 3. 27 선고 2018가합102540 판결 [사해행위취소.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성

변론 종결 2019. 3. 13

판결 선고 2019. 3. 2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587,863원 및 그 중 309,587,744원에 대하여 2018.2.28.부터 2018. 8. 3.까지는 연 10%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약정에 관하여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일 순서대로 '제1,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끼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그 후 제1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금액 153,000,000원, 보증기한 2018. 6. 15., 보증비율 85%로, 제2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금액 153,000,000원, 보증기한 2018. 6. 15.로 각 조건이 변경되었다.

신용보증약정신용보증약정일신용보증기간신용보증원금연대보증인제

1신용보증약정제2신용보증약정2011. 06. 23.2013. 03. 19.2012. 06. 22., 2014. 03.

18.180,000,000원B170,000,000원합계금350,000,0009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 A가 폐업하거나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아래와 같은 금액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이하 '확정손해금'이라 한다)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을을급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7. 대위변제수수료

다.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2011. 6. 23. 과 2013. 3. 20. 에 각 200,000,000원을 대출을 받았다.

라. 피고 A는 2018. 1. 5. 폐업하였고, 기업은행이 원고에게 이와 같은 신용보증사고 를 통지하자, 원고는 2018 . 2. 28. 기업은행에게 피고 A의 대출채무 원리금 합계310,022,230원(= 원금 306,000,000원 + 이자 4,022,230원)을 모두 대위변제하였다.

같은 날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변제금 중 434,486원을 상환하였다,

마.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고,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한 확정손해 금은 11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309,587,863원卜 309,587,744원(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에서 피고 A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자인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 확정손해금 119원] 및 그 중 309,587,74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2.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 8. 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규판사 박지은판사 이성열